# 건축사법



[시행 2016. 2. 12.] [법률 제13472호, 2015. 8. 11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 (건축문화경관과) 044-201-3776

제1장 총칙 <개정 2011. 5. 30.>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8. 11.>

- 1. "건축사"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(工事監理)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건축사보"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
  - 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건설, 전기・전자, 기계, 화학, 재료, 정보통신, 환경・에너지, 안전관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(技士)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  - 다.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
- 3. "설계"란 자기 책임 아래(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 건축물의 건축, 대수선(大修繕), 용도변경, 리모델링,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(工作物)의 축조(築造)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.
  - 가. 건축물, 건축설비,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
  - 나. 도면, 구조계획서, 공사 설계설명서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[이하 "설계도서"(設計圖書)라 한다]를 작성하는 행위
  - 다.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 조언하는 행위
- 4. "공사감리"란 자기 책임 아래(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「건축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,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,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지도・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5. "건축사업"(建築士業)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(業)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3조 삭제 <1977. 12. 31.>

- **제4조(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)** ①「건축법」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 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.
  - ②「건축법」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 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5조 삭제 <2011. 5. 30.>

제2장 자격 <개정 2011. 5. 30.>

제6조 삭제 <1977. 12. 31.>

제7조(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)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8조(자격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5. 30., 2013. 3. 23.>

- ② 삭제<1977. 12. 31.>
- ③ 삭제 < 2015. 8. 11.>
- ④ 삭제<1995. 1. 5.>

[제목개정 2011. 5. 30.]

**제9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8. 11.>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이 법 또는 「건축법」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3.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4.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(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**제10조(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)**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(이하 "건축사업무"라 한다)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**제11조(자격의 취소 등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5. 30., 2013. 3. 23.>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
- 2.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3.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
- 4.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
- 5.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
- 6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「건축법」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[(損潰): 무너져 내림]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
- ② 삭제<1995. 1. 5.>
-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5. 30.,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1977. 12. 31.]

[제목개정 2011. 5. 30.]

제12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<개정 2011. 5. 30.>

- 제13조(실무수련)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1.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(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「고등교육법」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)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
  - 2.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상이수한 사람
  - 3.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  -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④ 실무수련의 과목과 절차, 평가기준, 그 밖에 실무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- 제14조(건축사 자격시험)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- **제15조(건축사예비시험)**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<개정 2001. 8. 14., 2005. 7. 13.>
  - 1.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- 2.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
  - 3.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
  - 4. 삭제<2001. 8. 14.>
  -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개정 1996. 12. 30.,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1995. 1. 5.]

- 제15조의2(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)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,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 <개정 2013. 3. 23.> [전문개정 2011. 5. 30.]
- 제16조(시험과목 등)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, 시험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#### 제16조의2 삭제 <2011. 5. 30.>

- 제17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
  - 2.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
  - 3.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
  - 4.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
  - 5.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는 사람
  - 6.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사람
  - 7. 제23조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####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<신설 2011. 5. 30.>

- 제18조(자격등록 및 갱신등록)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.
  -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.
  - ⑥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, 구비서류,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 5. 30.]

- 제18조의2(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2.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  - 3.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
  - 4.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11. 5. 30.]

- 제18조의3(자격등록의 취소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2.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
  - 3.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
  - ② 삭제<2015. 8. 11.>
  -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### [본조신설 2011. 5. 30.]

## 제4장 업무 <개정 2011. 5. 30.>

제19조(업무 내용)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1.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(鑑定)에 관한 사항
- 2. 「건축법」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
- 3.「건축법」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·관리 및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
- 4. 「건축법」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
- 5. 이 법 또는 「건축법」과 이 법 또는 「건축법」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
- 6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- 제19조의2(업무 실적의 관리 등)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·공사감리 실적을 확인·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하고,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(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·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- **제19조의3(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)**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1. 국가
  - 2. 지방자치단체
  -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- 제20조(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) ① 건축사는 이 법,「건축법」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, 건축물의 안전 ・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  -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9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・종류・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「건축법」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1조(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)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, 공사감리보고서,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(이하 이 조에서 "설계도서등"이라 한다)에 서명날인 (署名捺印)을 하여야 한다.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22조 삭제 <2000. 1. 28.>

- 제22조의2(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
  - 2.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
  - 3.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
  - 4.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
  -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##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<개정 2011. 5. 30.>

- 제23조(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)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(이하 "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, 5, 30,, 2013, 3, 23,>
  -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(이하 "건축사사무소개설자"라 한다)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,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(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,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1. 5. 30.>
  -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·공사감리 업무를 수임(受任)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5. 30., 2013. 3. 23.>
  - ④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"건축사사무소"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5. 30.>
  - 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, 건축사,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.<신설 2011. 5. 30.>
  - ⑥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1. 5. 30.>
  - ⑦ 삭제<2000. 1. 28.>
  -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5. 30., 2013. 3. 23., 2013. 5. 22 >
  - 1.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
  - 2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

- 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
- 4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 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
- ⑨ 제8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1. 5. 30.>

[전문개정 1995. 1. 5.] [제목개정 2011. 5. 30.]

제23조의2 삭제 <1995. 1. 5.>

**제24조(신고의 제한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.

- 1.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2.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3.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
- 4. 이 법 또는 「건축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
- 6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25조 삭제 <1995. 1. 5.>

제26조 삭제 <1999. 2. 5.>

제27조(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·폐업 등의 신고)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, 건축사사무소 소재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- 제28조(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
  - 2.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
  - 3.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
  - 4.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
  - 5.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
  - 6.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
  - 7.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  - 8.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이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>
-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기준,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28조의2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
  - 2.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
  - 3.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- 제29조(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8. 11.>
  - 1.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
  - 2.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
 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- 제30조(보고·검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, 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- 제30조의2(건축사의 실무교육)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 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1.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
  - 2.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
  - 3.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5장의2 징계 <신설 2011. 5. 30.>

- 제30조의3(징계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 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
  - 2.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
  - 3.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

- 4.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
- 5.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- 6.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7.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8.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
- 9.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자격등록취소
- 2. 2년 이하의 업무정지
- 3. 견책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,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 협회(이하 "건축사협회"라 한다)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>
- ④ 삭제<2015. 8. 11.>
-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. 다만,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.<개정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11. 5. 30.]

제30조의4(건축사징계위원회) ① 건축사징계위원회(이하 "징계위원회"라 한다)는 국토교통부에 둔다. <개정 2013. 3. 23.>

-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, 건축사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3, 3, 23.>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[본조신설 2011. 5. 30.]

제6장 건축사협회 <개정 2011. 5. 30.>

제31조(건축사협회) ① 건축사는 건축사의 품위 유지, 업무 개선, 건축기술의 연구·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-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-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[전문개정 2011, 5, 30,]

제31조의2(사업)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- 1. 건축물에 관한 조사 연구
- 2.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
- 3. 건축사업무의 개선 발전
- 4.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
- 5.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
- 6.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7.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[전문개정 2015. 8. 11.]

**제32조(주사무소와 지부)** 건축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(支部)를 둘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33조 삭제 <2011. 5. 30.>

제34조 삭제 <2011. 5. 30.>

제35조(위임 규정) ①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건축사협회는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**제36조(「민법」의 적용)** 건축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37조 삭제 <2001. 8. 14.>

- 제38조(설립의 인가 및 공고) ① 건축사협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,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, 3, 23.>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③ 건축사협회가 설립된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건축사협회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**제38조의2(감독)**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1. 8. 14.]

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<신설 2015. 8. 11.>

- 제38조의3(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)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,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(이하 "공제조합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  -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 -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, 임원에 관한 사항,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  -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,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8. 11.]

[종전의 제38조의3은 제38조의11로 이동 <2015. 8. 11.>]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38조의4(공제조합의 설립인가)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8. 11.]

[종전의 제38조의4는 제38조의12로 이동 <2015. 8. 11.>]

제38조의5(공제조합의 사업)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- 1.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, 계약, 선급금지급, 하자보수 등의 보증
- 2.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
- 3.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
- 4.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・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
- 5.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
- 6.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
- 7. 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
- 8.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
[본조신설 2015. 8. 11.]

- **제38조의6(보증규정)**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하고, 보증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, 보증계약의 내용, 보증수수료,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8. 11.]

- **제38조의7(공제규정)**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,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, 공제계약의 내용, 공제료, 공제금,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8. 11.]

- 제38조의8(조사 및 검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.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  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 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8. 11.]

- **제38조의9(공제조합의 책임)**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본조신설 2015. 8. 11.]

**제38조의10(다른 법률의 준용)**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상법」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15. 8. 11.]

제6장의3 보칙 <개정 2015. 8. 11.>

제38조의11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 2015. 8. 11.>
- 1. 실무수련자의 관리
- 2.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
- 3.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
- 4.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, 등록증 발급 및 반납
- 5.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
- 6.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>
- ④ 시·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·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-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 5. 30.]

[제38조의3에서 이동 <2015. 8. 11.>]

**제38조의1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5. 8. 11.>

- 1.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- 2. 징계위원회의 위원

[본조신설 2011. 5. 30.]

[제38조의4에서 이동 <2015. 8. 11.>]

제7장 벌칙 <개정 2011. 5. 30.>

**제39조(벌칙)**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,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
- 2.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

[본조신설 2015. 1. 6.]

[종전 제39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<2015. 1. 6.>]

제39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
- 2.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
- 3.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 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
- 4.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 사업무를 수행한 사람
- 5.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
- 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
- 7.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
- 8.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
- 9. 삭제 < 2015. 1. 6.>

[제39조에서 이동 <2015. 1. 6.>]

제40조(양벌규정)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 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1. 6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[제42조에서 이동 <2011. 5. 30.>]

제4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
- 2.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・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삭제 < 2015. 8. 11.>
- 2.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
- 3.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
- 4. 삭제 < 2015. 8. 11.>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・징수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### 제42조

[종전의 제42조는 제40조로 이동 <2011. 5. 30.>]

제43조 삭제 <1984. 12. 31.>

**부칙** <제13472호,2015. 8. 11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3항, 제9조제1호 및 제4호, 제18조의 3제2항, 제29조제2호, 제30조의3제4항, 제38조의11제2항제4호, 제38조의12제1호,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것으로 본다.

- 제3조(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협회는 제 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.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제1항 전단에 따라 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 • 의무는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.
  - ③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건축사협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38조의3제 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대한 행위와 공제조합의 행위로 본다.
  - ④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출자한 회원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.
  - ⑤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납부된 출자금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납부된 출자금으로 본다.
- **제4조**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